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202
-----------	------

2024년 12월 17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김경훈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훈 의원)

1. 제안이유

- 글로벌 인재 육성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서 세계 시민 의식을 높이고, 특정 국가와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서 및 지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된 특수 외국어 (Critical Foreign Language)에 대한 서울시 내 학생의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교원 연수, 홍보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각급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김경훈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02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확장함과 동시에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우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를¹⁾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 정책 기조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정부는 한-아세안(ASEAN) 연대구상과 한-중양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연대·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2024년 6월 4일부터 2일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1] 4강(強)²⁾ 외 지역별 한국 외교 주요 정책³⁾

지역·협약체	주요 정책·전략	주요 국가 및 핵심 내용
인도-태평양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영역) : 동남아,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 등을 포괄 • 내용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등 9대 핵심 과제의 이행
對아세안	한-아세안 연대구상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 등 태평양과 인도양 연결 지역 내 10개국 • 내용 :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회원국 관계 강화, 한-아세안 메커니즘 내 협력 제고 등 8대 중점 과제 추진

1)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과 멕시코 등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들이 여기에 분류되며,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글로벌 노스의 과거 식민통치와 현행 국제질서 체계의 대항하기 위해 남반구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자료 : 박찬홍(2024.1.18.),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 <현안 외국예선?> 통권 제74호(제2024-2호), 국회도서관. 자료를 정리한 것임)

2)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함.

3)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외교부, 2024.3.7.)」,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대한민국정부, 2022.12.)」, 「한-아세안 연대 구상 소책자(대한민국 정부, 2023.4.11.)」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내용임.

지역·협약체	주요 정책·전략	주요 국가 및 핵심 내용
중앙아시아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국가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내용 : 자원협력, 개발 협력(ODA), 동반자 협력, 체계적 추진 4대 중점 과제 적극적 추진
중동·아프리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한 신중동 특수 실현 기여 2018년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최초 개최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강화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인프라·공급망·방산 등 협력 강화,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등 계기 고부가가치 창출 실질 협력 증진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한 한-태평양동맹 (PacificAlliance)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18~현재)

- 이러한 흐름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 변화라는 점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교류하는 국가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문화·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할 것인바, 상술된 상황은 초·중등 학교가 추구하는 국제화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범정부적인 시류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교육 주체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서울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 공동수업 강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단계적 배치 확대,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 다문화 학생 지원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동 계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뿐만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법령상 지정된 특수외국어의

4) 현행 교육과정 상 제2외국어과(고등학교 일반계열 기준)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가 운영되고 있다. 2027년까지 전 학년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와 동일함.

교·강사 임용과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여 제2외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의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표-2]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중 특수외국어 관련 내용⁵⁾

- 제2외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공론화
 - 제2외국어 및 특수외국어* 교·강사 임용 및 활용 관련 제도 개선 제안
 - *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53개)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 일본어와 중국어 등 특정 언어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이해를 증진하여 개별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과목을 편성한 고등학교는 각각 78.3%와 68.9%였지만, 그 외 언어를 편성한 학교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제2외국어 교과 편성·이수의 특정 언어 쏠림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2024년 기준 제2외국어 과목 편성 현황⁶⁾

(단위 : 교, %)

구분	일본어 I	중국어 I	프랑스어 I	독일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학교 수(318교)	249	219	25	9	14	1
비율	78.3	68.9	7.9	2.8	4.4	0.3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시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국제 정세 변화 및 제2외국어 교육의 다양성 확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지나 내용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5)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2023.11.), 「'세계로 열린 공동체 학교'를 향한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세계시민형 민주시민 양성 종합계획)」, 8쪽.

6) 서울시교육청(2024.10.),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3차)」, 183쪽.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다루고 있으며, 제4조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및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특수외국어와 특수외국어 교육, 조례에서 사용되는 학교와 학생의 정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2조제1호는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어로, 같은조 제2호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특수 외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특수외국어는 폴란드어와 브라질어, 터키어 등 총 53개 언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⁷⁾
- 따라서 해당 조문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수 외국어 교육의 개념을 어학 교육과 연계한 문화·지역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하고 있는바, 특수외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다른 언어권에 관한 정보 습득과 문화 교류의 기회로 작용하는 데

7) 특수외국어의 범위는 [붙임] 자료 참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경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역할 범위와 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을 위한 교원 양성은 교원양성체계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등으로 현안이 산적한 학교의 부담을 고려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⁸⁾
-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이미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⁹⁾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선택과목 확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사유로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의무마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8) 의월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9) 2024학년도 기준, 법령상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영일고), 아랍어(경기고) 등이 해당 교과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2024.10.),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3차)」, 183쪽.)

4)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이어 안 제4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에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교과 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수요와 연계하여 교육감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이후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에 관한 학교의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교원과 학생 등이 특수외국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특수외국어교육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02
----------	------------

제안연월일 : 202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 현장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적용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의 업무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u>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②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구입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